

연구윤리 및 표절에 대한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품질경영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적, 사회 공동 윤리를 손상하지 않도록 윤리 규정과 기준을 정함을 목표로 한다.

제2조(대상)

학회의 모든 회원들은 연구 윤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3조(연구자의 윤리)

- ① 회원은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정직성은 연구와 관련된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 방법의 설계,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출,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성을 의미한다.
- ②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 발표하지 않아야 한다.
- ③ 회원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④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밝혀야 한다.

제4조(연구 내용의 공개)

- ① 회원은 연구와 관련된 보안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결과물이나 발표물이 다른 연구자의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② 연구 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 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보안 등 제한범위 내에서 요청사항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연구 관련자 보상)

- ① 논문 등 출판된 연구 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발표된 결과에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 ② 공식적인 공동 연구자 또는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연구 결과물에 표시되는 등 노력 및 기여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도록 노력하며, 연구 과정에서 연구에 기여가 없는 사람에 대해 저자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표절에 관한 규정)

의도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주장이나 연구결과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관련 근거를 밝혔지만 타인의 연구 결과나 주장의 많은 부분을 인용 부호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것을 표절로 정의한다.

제7조(타 학술지 공동 제출 논문)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내용을 제출하거나, 심사과정 중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의 확정과 제재 내용의 확정은 일차적으로 해당 학회지 편집 위원회가 담당하며, 학회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제소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8조(연구윤리 위반 연구자 제재)

회원의 연구 및 학술지에 제출된 연구 내용에 있어 표절이나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된 연구 및 저자에 대해서는 편집 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① 학회 징계 서한 발송.
- ② 학회의 해당 학회지에서 해당 연구 결과 삭제 또는 수정 요구.
- ③ 연구 관련자의 적정 기간 동안 논문 투고 금지.
- ④ 연구 관련자의 적정 기간 동안 회원자격 상실 및 연구 관련자 소속기관 세부사항 통보
- ⑤ 학회에서 제명.

제9조(연구자 관리) 학회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한다.

- ①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확인
- ②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 직위도 확인
- ③ 학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세칙대비표

수정조항	수정 전	수정 후	사유
<p>한국품질경영학회 연구윤리 및 표절에 대한 내규</p>	<p style="text-align: center;">윤리위원회 표절에 대한 내규</p> <p>제1조(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p> <p>제2조(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혀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 출처는 밝혀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p> <p>제3조(심사주체) 한국품질경영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 및 그에 대한 제재 내용의 결정은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윤리위원회가 결정한다.</p> <p>제4조(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한국품질경영학회지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 인터넷 한국품질경영학회지에서 논문 삭제 ㉢ 한국품질경영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한국품질경영학회지에 표절사실 공사 ㉣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p> <p>제 5조(규정의 개정) 본 내규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연구윤리 및 표절에 대한 내규</p> <p>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품질경영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기본적, 사회 공동 윤리를 손상하지 않도록 윤리 규정과 기준을 정함을 목표로 한다.</p> <p>제2조(대상) 학회의 모든 회원들은 연구 윤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p> <p>제3조(연구자의 윤리) ① 회원은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정직성은 연구와 관련된 아이디어의 도출, 실험 방법의 설계, 결과의 분석, 연구비 지출, 연구 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의 전반에 관한 정직성을 의미한다. ②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 발표하지 않아야 한다. ③ 회원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④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밝혀야 한다.</p> <p>제4조(연구 내용의 공개) ① 회원은 연구와 관련된 보안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결과물이나 발표물이 다른 연구자의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② 연구 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 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보안 등 제한범위 내에서 요청사항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p> <p>제5조(연구 관련자 보상) ① 논문 등 출판된 연구 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발표된 결과에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② 공식적인 공동 연구자 또는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연구 결과물에 표시되는 등 노력 및 기여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도록 노력하며, 연구 과정에서 연구에 기여가 없는 사람에 대해 저자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p>	<p>표절에 대한 내규를 연구윤리 및 표절에 대한 내규로 전반적인 개정</p>

수정조항	수정 전	수정 후	사유
<p>한국품질경영학회 연구윤리 및 표절에 대한 내규</p>	<p style="text-align: center;">윤리위원회 표절에 대한 내규</p> <p>제1조(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p> <p>제2조(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p> <p>제3조(삼사주체) 한국품질경영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 및 그에 대한 제재 내용의 결정은 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윤리위원회가 결정한다.</p> <p>제4조(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① 한국품질경영학회지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② 인터넷 한국품질경영학회지에서 논문 삭제 ③ 한국품질경영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한국품질경영학회지에 표절사실 공사 ④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p> <p>제 5조(규정의 개정) 본 내규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제6조(표절에 관한 규정) 의도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관련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주장이나 연구결과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관련 근거를 밝혔지만 타인의 연구 결과나 주장의 많은 부분을 인용 부호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것을 표절로 정의한다.</p> <p>제7조(타 학술지 공동 제출 논문) 다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내용을 제출하거나, 심사과정 중에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의 확정과 제재 내용의 확정은 일차적으로 해당 학회지 편집 위원회가 담당하며, 학회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제소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p> <p>제8조(연구윤리 위반 연구자 제재) 회원의 연구 및 학술지에 제출된 연구 내용에 있어 표절이나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된 연구 및 저자에 대해서는 편집 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① 학회 징계 서한 발송. ② 학회의 해당 학회지에서 해당 연구 결과 삭제 또는 수정 요구. ③ 연구 관련자의 적정 기간 동안 논문 투고 금지. ④ 연구 관련자의 적정 기간 동안 회원 자격 상실 및 연구 관련자 소속기관 세 부사항 통보 ⑤ 학회에서 제명.</p> <p>제9조(연구자 관리) 학회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한다. ①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확인 ②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 직위도 확인 ③ 학회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 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